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4
------------	------

발의연월일 : 2016. 11. 11.

발의자 : 황주홍 · 이찬열 · 이동섭

전혜숙 · 정인화 · 이종걸

이양수 · 김종회 · 김관영

유성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량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수입 전에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에 대해 알아야 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형식승인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자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생략) <u><신설></u></p> <p>② (생략)</p>	<p>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